

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(제62조제1항관련)

구분 \ 종류		폐수수탁처리업	폐수재이용업
1. 기술능력		가.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나. 수질환경산업기사·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인 이상	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
2. 시설	가. 실험실	(1)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(2) 바닥 및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(3)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(4) (3)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폐수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(5)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(6)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(7)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나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	
	나. 저장시설	(1)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처리시설능력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. (2)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성상별로 구분·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하고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. (3) 폐수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. (4) 폐수저장시설은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를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	(1)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각각 폐수 재이용시설능력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. (2)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성상별로 구분·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하고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. (3) 폐수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. (4) 원폐수 및 재이용후 발생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 폐수를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

		(5) 폐수저장시설은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·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 (6) 폐수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소는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	(5) 폐수저장시설은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·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 (6) 재이용 및 폐수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소는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
	다. 처리시설	(1)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·건조시설·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·신고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같은 성상의 폐수만을 이송·처리하는 경우로서 등록기관이 당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) 처리시설의 능력은 1일 60m³(시간당 7.5m³) 이상이어야 한다. (3)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 (4)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·부착하여야 하고,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	(1)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 (2)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소각시설·건조시설·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기관에서 이러한 시설과 동등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. (3)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가동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. (4)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·부착하여야 하고,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(5)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.

		(5)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.	
3. 장비	가. 실험장비 등	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·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. (1) 수소이온농도(pH) (2)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(3) 부유물질(SS) (4) 페놀 (5) 시안 (6) 총크롬 및 6가크롬 (7) 아연 (8) 구리 (9) 카드뮴 (10) 비소 (11) 납 (12) 용해성망간 (13) 플루오르 (14) 수은	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·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. (1) 수소이온농도(pH) (2)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(3) 부유물질(SS) (4) 재생·이용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
	나. 운반장비	(1)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 m³ 이상의 탱크로리, 1m³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. 다만,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(2)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송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	(1)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 m³ 이상의 탱크로리, 1m³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, 20L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(유가품인 경우에 한한다)이어야 한다. 다만,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(2)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송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

	(3) 폐수운반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 (4) 폐수운반차량은 청색[색번호 10B5-12(1016)]으로 도장하고 양측면과 후면에 가로 50cm,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글씨로 "폐수운반차량", "회사명", "허가번호", "전화번호" 및 "용량"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(5)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·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	(3) 폐수운반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 (4) 폐수운반차량은 청색[색번호 10B5-12(1016)]으로 도장하고 양측면과 후면에 가로 50cm,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글씨로 "폐수운반차량", "회사명", "허가번호", "전화번호" 및 "용량"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(5)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·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-	---	---

- 비고 : 1. 각 시설장비 처리능력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때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3.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동일한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·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·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실험기기·기구 및 시약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.
5.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및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산업을 함께 영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·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.
6. 제1호 가목의 기술능력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 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

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